

의안번호	제 181 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월 4일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3년 1월 4일
발 의 자 : 이상정, 김정일, 박봉순,
안지윤, 안치영, 조성태,
박진희

1. 제안이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인용조항 및 일부 용어·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애인 학대와 피해 장애인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도지사의 예방 및 신고 관련 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4조의2)
- 시행계획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장애인인권교육 내용에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 5호
- 다. 협 의 : 노인장애인과
- 라. 비용추계 : 첨부제외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를 “**충청북도에**”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초대하는**”을 “**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경력**”을 “**장애 경력**”으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을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인정하는 장애인의**”를 “**인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로, “**보장하는**”을 “**보장받도록 하는**”으로 한다.

5.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이하 “**장애인 인권침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형의 인권침해 및 차별도**” 를 “**인권침해도**” 로, “**인권 침해와 차별의**” 를 “**인권침해**”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하**” 를 “**(이하**” 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상시**” 를 “**항상**”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차별 및 인권침해**” 를 “**인권침해**”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방안

제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차별과 인권침해**” 를 각각 “**인권침해**”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4.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를 “**(위원의 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 를 “위원을 해촉” 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u>차별과 인권침해</u>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충청북도에</u>----- ----- ----- ----- <u>차별과 학대 등</u> ----- <u>인권침해</u>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u>초래하는</u> 상태를 말한다. 2. (생략)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u>통상적으로 인정되는</u> 자를 포함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u>주는</u> ----- -----. 2. (현행과 같음) 3. ----- ----- ----- ----- ----- <u>일반적으로</u> ----- -----.

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생략)

4. -----
----- 장애 경력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

5.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 장애인”이란 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7. -----

----- 인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
----- 보장받도록 하는 -----.

8.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이하 “장애인 인권침해”라 한다)를 방지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 “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장애인의 권리 등) ① 장애인은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 및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인권침해와 차별의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 ③ (생략)

④ 장애인을 비롯한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의 계획 및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⑤ (생략)

제4조(장애인의 권리 등) ① -----
----- 인권침해도 -----
----- 인권침해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이하 -----

-----.

⑤ (현행과 같음)

<p><신 설></p>	<p>제4조의2(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도지사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 ③ (생략)</p> <p>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도 홈페이지에 <u>상시</u>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항상</u>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략)</p> <p>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2. (생략)</p> <p>3. 장애인 <u>차별 및 인권침해</u> 실태와 대응 방안</p> <p><신설></p> <p>4. · 5. (생략)</p> <p>③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인권침해</u> -----</p> <p>4.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 지원 방안</p> <p>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교육) ① · 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장애인 <u>차별과 인권침해</u> 행위의 개념과 사례</p> <p>3. 장애인 <u>차별과 인권침해</u>에 대한 신고, 조정, 권리구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p> <p><신설></p> <p>4. ~ 6. (생략)</p> <p>⑤ (생략)</p>	<p>제9조(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인권침해</u> -----</p> <p>3. ---- <u>인권침해</u>-----</p> <p>4. <u>피해 장애인 보호 · 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u>를 위한 사항</p> <p>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12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제12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 위탁) ① ----- -----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제2항-----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위원의 위촉을 해제</u>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7조(위원의 해촉) ----- ----- ----- <u>위원을 해촉</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23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3조(시행규칙) <삭제></p>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③ 삭제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2. 19.>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 사유

- 본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 조례안 제7조의 개정예 따라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부담이 요구되나, 본 개정 내용은 시행계획에 포함될 포괄적 사항으로 선언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등이 불비하여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